
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제1항 중 “텔레비전방송광고”를 “텔레비전방송광고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광고(이하 “방송광고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텔레비전방송광고”를 “방송광고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고시하여야”를 “고시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”로 한다.

1.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

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식품의약품안전처장, 특별시장·광역시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특별시장·광역시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”로, “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”를 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”을 “식품의약품안전처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”를 “시·도지사”로, “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”를 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제1호가목 중 “작성”을 “작성 및 확인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

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식재료 등의 구매·검수·조리 및 급식 배식에 대한 지도
다. 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교육. 이 경우 이
용자별 영양상태 평가 및 영양상담 지원, 이용자별 영양관리카드
작성 및 관리를 포함한다.

제13조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위생 지도 및 교육

제14조제4호 중 “종사자에 대한 영양 및 위생”을 “종사자 및 이용자에
대한 위생·영양”으로 한다.

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의3(민감정보의 처리)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해당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이 법에 따른 급식소 이용자별 영양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비용의 보조)”를 “(식생활안전관리원 운영 비용의 보조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“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”를 각각 “식생활안전관리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”를 “식생활안전관리원이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의2(광고시간의 제한 등)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·가공·수입 ·유통·판매하는 자에게 고열 량·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 유 식품에 대한 텔레비전방송광 고를 제한하는 시간은 오후 5시 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.	제7조의2(광고시간의 제한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텔레비전방송광 고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 송광고(이하 “방송광고”라 한 다)-----.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 항에 따른 텔레비전방송광고 제 한시간 외에도 어린이 기호식품 을 제조·가공·수입·유통· 판매하는 자에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 램의 중간광고(「방송법」 제73 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중간광고 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고열량 ·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 다.	② ----- ----- 방송광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·④ (생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10조(품질인증 업무의 위탁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4	제10조(품질인증 업무의 위탁) ① -----

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	----- ----- ----- -----.
<신 설>	1.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<u>식생활안전관리원</u>
1. 2. (생략)	2. 3.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)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<u>고시하여야</u>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고시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</u> ---.
제12조의2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) ① <u>식품의약품안전처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</u> 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<u>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</u> 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	제12조의2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) ① <u>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</u>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그 밖에 <u>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</u>	4. ----- <u>식품의약품안전처장</u> ----- ----- ----- ---
② <u>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</u> 한다.	② <u>시·도지사</u> ----- ----- ----- <u>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3조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) ① (생략)	제13조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 및 위생업무 담당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영양사: 다음 각 목의 직무 가. 급식소의 식단 <u>작성</u> 나.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<u>정보제공</u>	1. ----- 가. ----- <u>작성 및 확인</u> 나. 식재료 등의 구매·검수 <u>·조리 및 급식 배식에 대한 지도</u>

<u>다.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</u>	<u>다. 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교육.</u> <u>이 경우 이용자별 영양상태 평가 및 영양상담 지원,</u> <u>이용자별 영양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를 포함한다.</u>	<u><신 설></u>	<u>제23조의3(민감정보의 처리)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해당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이 법에 따른 급식소 이용자별 영양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</u>
2. 위생 업무 담당자: 다음 각 목의 직무 가. (생 략) <u>나.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</u> 다.·라. (생 략) ③ ~ ⑤ (생 략) 제14조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·운영비용의 보조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고 또는 지방비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. 1. ~ 3. (생 략) 4. <u>급식소의 종사자에 대한 영양 및 위생 교육 및 지도·관리에 필요한 비용</u> 5. (생 략)	2. ----- ----- 가. (현행과 같음) <u>나. 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위생 지도 및 교육</u> 다.·라. (현행과 같음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 제14조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·운영비용의 보조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<u>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위생·영양</u> ----- ----- 5. (현행과 같음)		